

세종시민체육대회규정

제정 2024. 4.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의하여 세종시민체육대회(이하 “시민체전”이라 한다)를 매년 관내에서 개최한다.

② 세종시민체육대회는 모든 시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시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량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종시민체육대회”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종목의 학생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시민체전”으로 한다.

제3조(권리·권한) 체육회는 시민체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중계방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조(대회 횟수) 시민체전은 2012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제5조(개최 기간) 시민체전은 매년 9월 중에 2일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시기 및 일정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경기행사제한) 시민체전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읍·면·동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와 그 산하 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회상징마크) 시민체전의 상징마크는 세종시의 상징마크 또는 체육회에서 별

도로 정한다.

제 8 조(대회표어) ① 시민체전의 표어는 시민체육대회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대회가) 시민체전의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노래 “꿈의도시 세종” 으로 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관하여 체육회는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는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럼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회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체육회가 소유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세종시민체육대회 위원회

제13조(설치) 체육회 정관 제37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세종 시민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체전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시민체전의 권역 분리, 개최일, 개최지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체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종목, 참가요강, 특별상 심사 등)
4.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제명처분, 출전여부 등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 등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5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체육, 문화, 언론, 법조인, 시민대표 등 각계 전문가 9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체육회 정관 제30조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장 1명(체육회장)
3.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이하
(당연직은 체육진흥과장, 본회 사무처장, 읍·면·동체육회장 대표, 읍·면·동체육회 사무국장 대표, 개최 회원종목단체 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명처분, 출전자격여부, 기타 징계 등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경기종목

제18조(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시민체육대회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체육대회 정식종목(11): 게이트볼,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2. 시민체육대회 시범종목(5): 궁도, 그라운드골프, 씨름, 야구소프트볼, 파크골프

③ 제2항의 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연도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종목은 그 다음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은 예외로 하며, 제33조에 따라 평가회 개최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선수 육성 및 방안 성과계획을 매년 제출·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정식종목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33조 평가회와 제13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3년 동안 미출전한 경우에는 시민체육대회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

⑥ 체육회는 세종시 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추가 할 수 있다.

⑦ 대회기간 중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은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체육대회 종목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 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20조(경기방법) ① 시민체전의 경기는 읍·면·동 대항전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민체전의 모든 경기운영은 경기운영 내규 및 종목별 참가 요강에 의하되 경기운영 내규 및 참가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제21조(예선대회) 읍·면·동체육회는 시민체전 참가 읍·면·동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참가신청) 읍·면·동별 대표로 확정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 요강에 의거 기일내에 해당 체육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참가요강) ① 시민체전의 일반사항·참가자격·경기종목별 참가요령 등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시민체전 참가요강의 변경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24조(중계방송권) ① 시민체전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25조(주관방송사) ① 체육회는 시민체전의 중계방송 권리, 개·폐회식 등 행사 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주관방송사의 선정 및 주관방송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④ 주관방송사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제26조(광고 등의 설치) ① 시민체전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 내 광고의 설치 및 표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체육회가 보유하되, 회원종목단체가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에 그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경기장 내 시설 및 경기에 필요한 용품 등에 광고를 설치 및 표기하려는 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경기장 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5장 참가금지

제27조(참가금지) ① 시민체전에 참가 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선수 및 단체는 차기 시민체전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 ② 참가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읍·면·동체육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2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차기 시민체전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28조(지위변동) 무자격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수 또는 해당 소속 단체는 실격 처리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와 점수는 무효 처리하며,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와 점수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 제29조(무자격선수)** ① 무자격선수 출전이 판명되면 선수소속 읍·면·동은 해당 종목에 대하여 차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② 무자격선수 출전이 판명되면 해당 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 관계자에 대해 제1항의 차기 대회 출전 제한 외 별도의 징계를 줄 수 있다.
- ③ 무자격선수라 함은 참가신청한 선수와 실제로 출전한 선수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경기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나 참가신청 외 출전한 선수를 포함한다.
- ④ 해당종목이라 함은 개인경기는 해당 세부종목, 단체경기와 개인단체 경기는 해당 종별을 말한다.

- 제30조(규정준수의무)** ① 시민체전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해당 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대회운영

- 제31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 경기일정은 각 종목단체와 협의하여 체육회가 결정한다.
- ② 대진은 각 읍·면·동체육회 대표자 임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 제32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경기를 담당한 대표심판(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해당 경기 부문의 심판장이 이를 처리한다.
- ③ 해당 경기 부문 심판장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가 이를 처리한다.

- 제33조(평가회 개최)** 시민체전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 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제7장 채점 및 시상

제34조(순위결정) 시민체전의 읍·면·동별 또는 권역별 종합순위는 읍면동체육회의 화합과 시민들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목별 시상 외 읍면동체육회 간의 종합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제35조(채점방법) 시민체전의 채점은 참가 읍·면·동체육회에 대해 최하위 읍·면·동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배점한다. 참가 읍·면·동의 수는 체육회가 발표한 대진표에 의한다. 단,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종합채점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시상구분) 시민체전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세부분야에서 입상한 개인에게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을 각각 수여한다.
2. 종목별 세부분야에서 입상한 단체에게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을 각각 수여한다.
3. 각 종목의 종별 최우수선수상
4. 기타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이 정하는 상

제8장 개·폐회식

제37조(초청) 개·폐회식 초청은 체육회 회장 명의로 하며, 초청 인사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정한다.

제38조(일정) 개회식은 대회 첫날, 폐회식은 대회 최종일 마지막 경기 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개·폐회 선언) 개·폐회 선언은 체육회 부회장 중에서 선언한다.

제40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로 구성하며 체육회에서 진행한다.

제9장 소청 및 처리

제41조(소청) 시민체전에 참가한 임원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2조(심의이관) 폐회식 이후에는 시민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부칙 <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